서 울 특 별 시

우 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전화 (02)731-6660 /전송731-6956
처리부서: 세무행정과(본관3층 연금매점옆) 담당 김 태 호

문서번호 세정 13415- 197
시행일자 1998. 03. 06
(경유)
수신 내부결재
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년	
국 장	전 결	
과 장	위정복	
계 장	[illegible]	
기안	김태호	협조

고시·공고 1998. 3. 06 제1998-17호

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

1. 내무부 세제 13400-41('98.02.16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문서와 관련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.

첨부 입법예고(안)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

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입법예고(안) 1부. 끝.

원본대조필 2월 연

세 무 행 정 과 장

공 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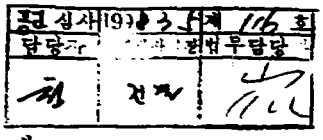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- 호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8. 3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자치법규개정 :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
2.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
   가. 현재는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, 이를 2,000씨씨 이하 승용차·이륜차·1톤이하 화물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 중 1대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함.
   나. 현재는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% 경감하고 있으나, 이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하면 50% 경감하되 금융기관·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 기업의 부동산양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.
   다. 현재는 사업양수도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·등록세를 50% 경감하고 있으나, 이를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조세감면

규제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를 면제하되 금융기관·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 기업의 사업양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.

라. 대도시내의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주택 등이 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 하므로 준공업지역에 도시형 공장를 신·증축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% 경감하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세무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, 전화 731-6656~9, FAX 731-695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